



제418회국회(임시회)
제7차 정무위원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융회사의 고발수사의뢰 시 금융위원회 보고 및
자료보존 의무 부과 등〉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86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고발·수사의뢰 시 금융위원회 보고 및 자료보존 의무 부과	2
2.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통보 의무 등 ...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9. 3.
3. 회 부 일 : 2024.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사이에 수사의뢰의 남용이나 정보주체로서의 권익 침해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u>고발일 또는 수사의뢰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u>
--	-------------------------------------

□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1)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함)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함.

○ 또한, 법 제4조2)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보험사기행위 관련 보험회사의 금융감독원 보고 현황 및 고발·수사의뢰 현황을 보면, 2023년에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건수가 7,165건, 고발 및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건수가 7,905건임.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보험사기행위 관련 보험회사의 금융감독원 보고 현황(법 제4조)>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월
손해보험	5,241	5,353	5,534	6,211	3,226
생명보험	944	794	855	922	356
기타	11	24	34	32	1
계	6,196	6,171	6,423	7,165	3,583

(자료: 금융위원회)

<보험사기행위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현황(법 제6조)>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월
금융위	-	-	-	-	-
금감원 ¹⁾	14 (12)	40 (34)	88 (65)	82 (73)	29 (21)
보험회사 ²⁾	7,302	6,874	6,887	7,823	6,186
합 계	7,316	6,914	6,975	7,905	

주1) ()는 금감원 전체 조치 건수 중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 보고에 따른 조치 건수

주2) 각 보험회사로부터 취합한 건수의 합계로, 보험회사는 '24.8월 기준으로 취합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사유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수사의뢰를 남용할 경우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 법 시행령 제3조³⁾에 따라 보험회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수사의

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으로 인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해당 사실과 수사기관에 송부한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분별한 수사의뢰를 억지함으로써 수사의뢰가 보험금 지급의 지체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용별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안 제6조제2항 후단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사실 및 수사기관에 송부한 보험사고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 그 중 “보험회사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사실”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행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있으나 고발·수사의뢰 건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 제4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 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나. 법 제6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보험사기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 예방 및 대응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 다만, 이해관계자인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는 보험회사는 이미 법 제4조에 따라서도 보험사기 혐의점 인지 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으므로, 고발·수사의뢰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업무효율성의 저하 및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초래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수사기관에 송부한 보험사고 관련 자료”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수사의뢰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개인의 병명, 치료이력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시 제출하는 관계 서류의 양이 방대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는 수사의뢰 자료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자료를 금융당국에 송부하기보다는 안 제6조제3항과 같이 보험회사에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다음으로**, 안 제6조제3항은 보험회사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에 해당하는 자료 및 수사기관에 송부한 자료를 고발일 또는 수사의뢰일로부터 5년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수사

의뢰를 방지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등과의 분쟁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와 관련하여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보험회사는 의료기록 등 다수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사기 관련 자료⁴⁾의 특성상 보험금 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는 수사종료 시 즉각 파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고려할 때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수사의뢰의 억지와 보험사기 예방 및 대응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보험회사의 업무효율성 저하, 개인 민감정보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협의정보 송부 시 포함하는 정보: 협의자 인적사항, 보험계약 및 보험료 납부 현황, 보험금 지급 현황, 입·퇴원 일자 및 병명, 사고일자 및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정보 등 (금융감독원)

2.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통보 의무 등

□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 사실을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남용 행위를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u><신 설></u>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치) ④ 제1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해당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회사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신 설></u>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u><신 설></u>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인원이 증가⁵⁾하고 있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⁶⁾에 따라 하나의 보험 사건에 다수의 보험회사가 연관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수사를 의뢰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는 수사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의 고발·수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이 해당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고발·수사의뢰 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고발·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한 보험회사 외의 이해관계인이 보험사기 혐의 사실을 인지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고발·수사의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며, 내용별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안 제6조제4항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행위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사

5) 적발 금액: ('17) 7,302억원 → ('22) 1조 818억원, 적발인원: ('17) 8만 3,000여명 → ('22) 10만 2,679명 (자료: 금융위원회)

6) 전문 브로커 조직과 결탁한 보험사기, SNS 등을 통한 공범자 모집,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 공유 (예: 영상물 게시) 등

고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한 다른 보험회사도 보험사기 혐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관계 부처인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관련 규정⁷⁾에 따라서도 수사결과,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고 있어 제3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6조제5항은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를 한 경우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수사의뢰를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

7)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
2. 제51조제1항제5호 또는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법 제256조에 따른 송치는 제외한다) 결정을 한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우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 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자 등이 해당 정보제공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현재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가입 시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민감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를 받고 있고, 수사의뢰 초기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경우 증거 인멸 등 수사 진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사실 통보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안 제6조제6항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고발·수사의뢰 사실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안 제6조제2항)만으로도 수사의뢰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관련 법령에서 개별 사안의 남용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기행위 고발·수사의뢰 남용에 대한 감독의무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4